##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1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서범수・이인선・이달희

김상욱 · 강선영 · 이헌승

고동진 • 조은희 • 권영세

권영진 · 김소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 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 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및 제65조제3항 등).

#### 법률 제 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장이 집행한다"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집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등의 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과) ① ~ ⑤ (생 략)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6
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	
고, 징역형 이상의 <u>실형</u> 과 병과	실형(치료감
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u>항에서 같다)</u>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	-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
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	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
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행한다
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	
행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u>교정</u>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생 략)

제65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기시에 불응하여 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지에 불응한 여자를 이해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생 략)

⑧ <u>교정</u>
시설등의 장
⑨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이</u> )
③
실형(치료감호와 징역
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u>를 포함한다)</u>
<u>교정시설등의 장</u>
④·⑤ (현행과 같음)